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경제산업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7일, 윤종호 의원 외 2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 2023년 8월 3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윤종호 의원

나. 제안이유

○ 경북도민이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경북형 경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기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을 적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경제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가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을 인용하여 일부 용어의 정의를 추가(신설)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의무 및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 및 시행규칙의 수립 의무를 신설하며, 기타 조문의 표기 일부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경제교육”, “경제교육인력”, “경제교육단체”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안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에서는 조문의 문맥 및 띄어쓰기, 조례 표기방법 등을 수정하는 것임

- 안 제8조(회의) 제2항에서는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1회 이상”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안 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는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 추진을 위해 추진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을 신설함
- 안 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는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 추진을 위한 경제교육인력 양성과 방법을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함
- 안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실행방법으로 위탁의 근거를 신설함
- 안 제12조(재정지원)는 현행 제9조의 내용을 제12조로 변경하며 일부 문맥의 내용을 수정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임
- 안 제14조(공청회 등)는 필요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의 근거를 신설함
- 안 제15조(시행규칙)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부에서 마련하도록 시행규칙 수립의 근거를 신설함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 아울러 조례에 근거한 행정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명확성, 구체적 실현가능성 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와 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책무와 실행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조례의 개정 범위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즉,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지사(제3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교육감(제4조)을 같은 조례에 포함하여 각각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이후 조항에서는 “경상북도지사”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4조(교육감의 책무)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행 조례 내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항의 신설 또는 제4조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